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6
----------	-----

2023. 6. 23.(금)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6월 9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의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전통주 육성지원사업 내용,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 수립(안 제4조)
- 사업지원(안 제5조)
-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이용 활성화(안 제6조)
- 지역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안 제7조)
- 포상(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필요성) 이 조례안은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나. (타당성) 이를 위해 육성계획 수립, 공식행사 이용 활성화, 지역 우수전통주 홍보와 포상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은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 내용이 타당함

다. (법적합성) 이 조례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조항들은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은 물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의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지역전통주 관련 기술개발·보급,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전통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전통주 소비문화 장려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전통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지역전통주 홍보 및 판매 등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4. 그 밖에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및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6조(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이용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시·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

제7조(지역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 우수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역 우수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2. 6. 1., 2013. 3. 23., 2013. 4. 5., 2015. 3. 27.,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29., 2021. 11. 30.>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전통주
  -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4. ~ 8. (생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지역 우수 전통주 제조업체에 브랜드,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촉진에 기여

## 2.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 우수 전통주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

## 3. 관련조문

- 안 제4조, 5조, 7조, 8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비용은 지속발생 예상, 추계는 '23~'27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지원규모
  - 지역 우수 전통주 홍보 및 소비촉진은 연 3개소에 28,8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교육 및 컨설팅지원은 연 5개소에 2,000천원 범위 내 지원 가정
    - ※ '23년 전통주 양조장 역량강화 사업(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참고
  -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은 연 3개소에 5,000천원 범위 내 지원 가정
    - ※ '23년 글로벌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사업(도 농식품유통과)에 포함 추진

나. 추계 결과 : 432,000천원

○ 산출과정

- 제4조(계획 수립) : 자체추진, 비용 미발생

- 제5조(사업지원) 제1호 ~ 4호

▶ 지역전통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기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60,000천원

(국<sup>24,000</sup>, 도<sup>7,200</sup>, 시군<sup>16,800</sup>, 기타<sup>12,000</sup>)

▶ 지역전통주 홍보 및 판매 등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기존)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86,400천원

(도<sup>13,824</sup>, 시군<sup>55,296</sup>, 기타<sup>17,280</sup>)

▶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신규) 지역우수 전통주 업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0,000천원

(도<sup>1,000</sup>, 시군<sup>4,000</sup>, 기타<sup>5,000</sup>)

- 제7조(지역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

▶ (기존) 글로벌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15,000천원(도비100%)

- 제8조(포상) : 도지사포상 업무지침(도 인사혁신과)에 따라

각종 품평회 등 성적에 의한 포상 수여계획에 따라 별

도 비용 미발생

○ 산출결과 : 총857,000천원

(국<sup>120,000</sup>천원, 도<sup>185,120</sup>천원, 시군<sup>380,480</sup>천원, 기타<sup>171,400</sup>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14%), 도비(22%), 시군비(44%), 자담(2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